

2023. 7. 10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9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

아이돌봄담당관	김연주	2133-4801	
돌봄총괄팀장	이동주	2133-4802	
담 당 자	김현정	2133-4804	
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돌봄사업실	돌봄사업실장	김주미	810-5404
	아동정책사업팀장	허미화	810-5494
	담 당 자	오유정	810-5473

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돌봄사업실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9쪽

서울시, 20% 할인혜택 '서울형 인증 키즈카페' 참여업체 모집

- ‘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’ 참여업체 25개소 모집 7.17.(월)~7.20.(목)
- 전용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도 발행...구입시 20% 할인, 평일 입장료 10% 추가 할인
- 내년 9월 말까지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 지정...우리동네키움포털 등서 홍보효과 기대
- 시 “26년까지 인증규모 지속적으로 확대하고, 추가 지원방안도 발굴할 것”

- 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하고, 아이, 양육자, 사업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9월부터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‘서울형 인증제’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, 참여 키즈카페 25개소를 모집한다.
- ‘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’는 안전, 위생관리 등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‘서울형 인증 키즈카페’로 지정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‘서울형 키즈카페’를 확대하고,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.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.

- 서울시는 인증제 도입과 함께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도 오는 9월 초,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.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는 구입시 20% 할인 혜택이 있고, 결제시 평일 입장료를 10%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.
 -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공지사항을 통해 구체적인 발행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, 또한 서울페이플러스를 포함한 5개 앱(▲서울Pay+ ▲신한SOL ▲티머니페이 ▲머니트리 ▲신한pLay)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.

-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평일 키즈카페 입장료 30%, 그 외 이용료 및 주말 입장료는 20%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, 향후 서울형으로 인증된 민간 키즈카페에 시민들의 잦은 방문을 기대할 수 있다.
 -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 키즈카페는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로 결제하는 고객의 평일 입장료를 10% 추가 할인해야 하며, 이를 미 이행할 경우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에서 제외된다.

- <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> 참여업체 모집 공고는 7월 11일(화)부터 서울특별시 누리집(<https://www.seoul.go.kr>)에 게시되며,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는 7월 17일(월)부터 7월 20일(목)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
 - 신청자격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의 ‘키즈카페업’에 해당해야 하며, 공간 전용면적이 최소 120㎡ 이상이어야 한다.
 -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키즈카페는 신청자격에서 제외

되며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행정처분 중인 시설이 아닌 경우,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지급을 명 받은 시설이 아닌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.

- 또한 소비자가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도 의무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.

□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는 기구 안전 관리, 공간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확인한 ‘자가점검 이행확인서’와 시설물의 안전관리 사항 등을 점검한 ‘안전설비 점검 체크리스트’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□ 자치구에서 현장확인으로 인증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우선 선별하며, 이중 25개소가 ‘인증심의위원회’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.

※ 인증절차(안) : 市 공고 → 區 접수 →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심의 → 市 인증 확정



- 자치구는 8월 10일까지 신청한 민간 키즈카페에 직접 방문하여 인증지표에 따라 ①이용자 안전성 확보 ②이용자 편의성 확보 ③아동이용공간 위생 관리 ④휴게음식공간 위생관리를 확인하고 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.
- 인증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를 최종 확정한다.

□ 인증이 확정된 민간 키즈카페는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말까지 약 1년의 기간동안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로서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 사용처로 지정되며,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(<https://icare.seoul.go.kr/>)

및 서울페이구매앱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꾸준히 노출되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

- 인증기간 종료 후, 인증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시에서 연 1회 의무로 시행하는 안전관리 점검·지도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.

- 또한,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하는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시 도시생활 지도인 ‘스마트서울맵(<https://map.seoul.go.kr>)을 통해 위치와 안내가 제공되며,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 도어스티커() 및 서울형 인증스티커()를 부착해서 시민들에게 안내될 예정이다.

- 서울시는 금년에는 시범운영 사업으로 25개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제로 지정하되, 향후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증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.

-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“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가 서울형 키즈카페와 민간 키즈카페의 상생을 넘어 이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”며 “앞으로도 서울형으로 인증된 민간 키즈카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니, 민간 키즈카페 업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

2023년 <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> 참여시설 모집 공고

1. 사업명 :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
2. 인증기간 : 2023. 9월 ~ 2024. 9월말 [약 1년간]
3. 공고기간 : 2023. 7. 11.(화) ~ 7. 20.(목), 10일간
4. 접수기간 : 2023. 7. 17.(월) ~ 7. 20.(목), 09:00~18:00
 - ※ 단, 우편접수일 경우 7월 17일 이전 도착분도 접수 가능하나 7월 20일, 18:00 이후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접수제외
5. 접수방법 : 우편접수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자치구 현장방문(붙임참조)
6. 인증개소 : 25개 민간 키즈카페
7. 신청자격 : 다음 요건(①~⑥)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

① 아래내용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키즈카페 ※ 「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」 준용 등

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※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제외됨
- 실내에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
-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·제공하는 영업
 - ※ 일반음식점영업, 단란주점영업, 유흥주점영업, 위탁급식영업, 제과점영업의 경우 제외됨
 - ※ 식품접객업(식음료 판매)이 주가 되는 형태로서, 손님에게 무료(서비스)로 유기기구,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 제외됨(OO감자탕, OO레스토랑, OO초밥, OO갈비 등)

- ② 전용면적 최소 120㎡ 이상인 키즈카페 ※ 전용면적 : 키즈카페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바닥면적
- ③ 인증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 절차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중인 시설이 아닌 경우
- ④ 인증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지급을 명 받은 시설이 아닌 경우
- ⑤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닌 키즈카페(운영시간동안 반드시 인력이 상주해야함)
- ⑥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 시설 ※ 타 조건 충족 시 현장심사일 전까지 등록할 수 있음

8. 참여조건(인증업체 의무이행사항)

- 전용 상품권 사용자에게 평일 이용자 입장료 10% 추가할인 실시
- 입장료 등 가격 인상시 市 또는 區 협의 필요 ※ 식음료 포함, 무단 인상 시 인증 취소

9. 신청서류

1) 인증 신청서 1부	2) 자가점검 이행확인서 1부	3) 안전설비 점검 체크리스트 1부
4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5) 신고·등록 현황 관련 서류 1부	6) 전용면적 확인 서류 1부

※ 1)~3) 양식은 [서울시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.go.kr>)의 서울소식 → 공고 → 고시공고] 에서 내려 받거나 자치구 접수부서에서 교부받아 작성(붙임 참고)

- 5) : 기타유원시설업, 어린이놀이시설, 식품접객업(휴게음식점영업)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6) : 키즈카페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(건축물대장 등) 제출

10. 인증시설 지원내용

- 20% 할인구매 가능한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 사용처 등록
- 안전관련 소요물품구입비 소액 지원, 서울형 인증마크 제공 등

11. 인증지표 및 항목, 심사기준 등

○ 인증지표 및 항목

지표	주체	세부지표 및 항목	
자 가 점 검	신청시설	① 기구 안전관리(5개 항목)	※ 별도붙임 참조
		② 공간 안전관리(5개 항목)	※ 별도붙임 참조
현 장 관 찰 23.7.21.~8.10. 실시예정	자치구	① 이용자 안전·편의(2개 항목)	- 이용자 안전성 확보(12) - 이용자 편의성 확보(6)
		② 위생관리(2개 항목)	- 아동 이용공간 위생 관리(5) - 휴게음식공간 위생관리(4)

○ 심사기준 : 신규인증 부여 기준은 아래와 같음

- ① 자가점검 지표에 대한 자가점검 후 이행완료 서약을 완료한 시설
- ② 현장관찰 지표, 총점 22점 이상인 시설(27점 만점)은 인증심의 대상
※ 식품을 미취급 시설의 경우 총점 18점 이상 시설(23점 만점)
- ③ ①+② 충족시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 결정 <25개소 인증시설 확정 예정>

12. 선정결과 발표 : 2023. 8. 30.(수) 예정 ※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경 가능

- 방법 :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를 통해 개별통보(탈락자는 [통보 안함](#))

13. 기타사항

- 가.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인증을 무효(취소)로 합니다.
- 다. 인증지표별 입증책임은 해당 시설에 있으며, 현장관찰 또는 인증 이후 필요시 추가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증 불가 또는 인증무효(취소)될 수 있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인증 이후 위반사항 또는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즉시 인증을 무효(취소)로 합니다.
- 마. 인증시설은 인증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, 인증시설로 선정 시 ‘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의무사항 이행 협약서’ (양식은 선정결과 발표시 첨부예정)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(미제출시 인증시설에서 제외)
- 바. 인증시설은 아래 사유로 인한 경우, 인증이 취소됩니다.

- 인증시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- 인증기간 중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 취소, 폐지, 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
- 인증기간 중 소재지가 서울시에서 다른 시도로 변경되는 경우
- 인증기간 중 행정처분 절차 또는 과징금 지급(부과)을 명받은 경우
- 인증기간 중 폐업신고를 한 시설일 경우
- 그 밖에 인증시설로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판단한 경우

※ 인증기간 중 매매 또는 양도·양수 등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, 인증변경으로 추진

- 사.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,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기 관	연락처	기 관	연락처	기 관	연락처
서울시	2133-4804	성북구	2241-2554	구로구	860-2844
여성가족재단	810-5473	강북구	901-6684	금천구	2627-1413
종로구	2148-2964	도봉구	2091-3852	영등포구	2670-3370
중구	3396-5412	노원구	2116-3719	동작구	820-9766
용산구	2199-7013	은평구	351-7103	관악구	879-6103
성동구	2286-6861	서대문구	330-1359	서초구	2155-6709
광진구	450-7542	마포구	3153-8963	강남구	3423-5853
동대문구	2127-4255	양천구	2620-4833	송파구	2147-2781
종량구	2094-1769	강서구	2600-6756	강동구	3425-9212

※ 신청서 등 기타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의 공고 게시문을 통해 확인 가능

【붙임 1】

자치구별 신청서 제출처

연번	자치구명	담당부서	주소	연락처
1	종로구	아동보육과	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7층, 아동보육과	2148-2964
2	중구	가족정책과	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, 중구청, 본관 5층 가족정책과	3396-5412
3	용산구	어르신청소년과	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, 용산구청 5층, 어르신청소년과	2199-7013
4	성동구	영유아과	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, 성동구청 10층, 영유아과	2286-6861
5	광진구	가정복지과	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,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, 가정복지과	450-7542
6	동대문구	보육여성과	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, 동대문구청 3층, 보육여성과	2127-4255
7	중랑구	보육지원과	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, 중랑구청 3층, 보육지원과	2094-1769
8	성북구	여성가족과	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, 성북구청 7층, 여성가족과	2241-2554
9	강북구	여성가족과	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, 강북구청 5층, 여성가족과	901-6684
10	도봉구	아동청소년과	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, 도봉구청 5층, 아동청소년과	2091-3852
11	노원구	여성가족과	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, 노원구청 6층, 여성가족과	2116-3719
12	은평구	보육지원과	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80(응암1동) 별관2층, 보육지원과	351-7103
13	서대문구	가족정책과	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, 서대문구청 본관 2층, 가족정책과	330-1359
14	마포구	아동청소년과	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본관 6층 아동청소년과	3153-8963
15	양천구	보육정책과	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6층, 보육정책과	2620-4833
16	강서구	가족정책과	서울시 강서구 화곡로44나길 72 (화곡동) 강서구청 별관 5층, 가족정책과	2600-6756
17	구로구	가족보육과	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245 구로구청	860-2844
18	금천구	가족정책과	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, 금천구청 신관 5층, 가족정책과	2627-1413
19	영등포구	보육지원과	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, 영등포구청 별관 A-2동 1층 보육지원과	2670-3370
20	동작구	영유아보육과	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빌딩 3층, 영유아보육과	820-9766
21	관악구	여성가족과	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, 관악구청 본관 3층, 여성가족과	879-6103
22	서초구	여성보육과	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, 서초구청 본관 2층, 여성보육과	2155-6709
23	강남구	보육지원과	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(보건소건물), 4층 보육지원과	3423-5853
24	송파구	여성보육과	송파구 올림픽로 326, 송파구청 본관 5층 여성보육과	2147-2781
25	강동구	보육지원과	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, 강동구청 본관 5층, 보육지원과	3425-9212



서울페이 도어스티커



서울형 인증스티커(안)